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특기자 관리 규정

제정	2004. 3. 8.	규칙 제423호
개정	2011. 9. 8.	규칙 제569호
	2011.11.15.	규칙 제578호
	2016.11.11.	규정 제721호
	2017.12.14.	규정 제748호
	2019.11.22.	규정 제806호
	2020.11.23.	규정 제82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체육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35조제2항에 따른 체육특기자(이하 “특기자”라 한다)의 육성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력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2.>

제2조(육성종목과 특기자) ① 학칙 제76조의 체육학과 육성종목은 다음과 같다.
레슬링, 배드민턴, 복싱, 빙상(쇼트트랙스피드스케이팅, 스피드스케이팅, 피겨스케이팅), 사격, 사이클, 수영, 양궁, 역도, 유도, 육상, 체조, 태권도, 펜싱, 근대5종, 조정, 카누, 테니스, 하키, 핸드볼, 골프, 볼링, 스키(노르딕복합, 스노보드, 스키점프, 알파인스키, 크로스컨트리, 프리스타일스키), 썰매(루지, 봅슬레이, 스킨레톤), 바이애슬론, 컬링
② 체육학과 육성종목이 아닌 다른 학과 특기자 종목은 매 학년도마다 대학입학 전형관리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조(경기력향상위원회) ① 특기자의 훈련, 출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력향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1.22.>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적인 훈련의 기본방침 및 계획
 2. 연간 대회 출전계획
 3. 체육 국제 교류(해외 출전, 해외 전지훈련 및 합동훈련)
 4. 실험 실습 기자재 선정
 5. 훈련 및 대회 입상 분석
 6. 삭제 <2017.12.14.>
 7. 삭제 <2017.12.14.>
 8. 이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9. 경기력 향상과 관련되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상정한 사항
 10. 특기자 관련 예산 집행계획 <신설 2017.12.14.>
 11. 특기자 육성종목 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2.14.>
 12. 특기자 수시·정시 세부 모집인원 배정 및 예비충원 순위 조정 <신설 2019.11.22.>
- ③ 위원회는 훈련학생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체육학과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사무국장, 생활관장, 체육과학연구소장 및 총장이 위촉하는 조교수 이상의 위원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1.23.>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총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관련 안건의 상정을 요구할 경우에 소집한다.
-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제4조(대회 출전계획) ① 연간 대회 출전계획은 훈련학생처에서 매 학년 초 각 부의 출전계획을 심사하여 수립하되, 예산 및 수업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3.>

② 대회출전은 연간 대회 출전계획 및 관련문서를 근거로 지도교수가 대회출전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연간 대회 출전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출전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대회출전 등) ① 특기자는 총장이 정하는 대회에 연간 1회 이상 출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전을 면제할 수 있다.

② 특기자의 출전 대상 대회는 전국 규모대회로 한다. 다만, 전국대회 출전을 위한 지역선발전은 예외로 한다.

③ 국제대회 출전은 해당 중앙경기가맹단체에서 국가 대표(또는 국가 대표급)로 선발되어 출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국제 경험과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각 부에서 필요한 국제대회 출전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④ 개인 자격으로 출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훈련학생처장을 거쳐 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1.23.>

제6조(대회출전 제한) 특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전을 제한한다. 다만, 지도교수가 특별히 추천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

1. 재학 중 2회 이상 징계(유기정학 이상)를 받은 자
2. 본교에서 정한 체력기준 이하인 자
3. 대한체육회 선수 등록기준에 위배되는 자

제7조(출전경비 및 격려금) ① 총장이 승인하는 대회출전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학생 및 각종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에 대하여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격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조(출결처리) 특기자는 「한국체육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6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매학기 수업일수의 2분의 1이상을 출석하여야 한다.

제9조(출전결과 보고) ① 각 부의 지도교수는 대회 종료 후 3일 이내에 출전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훈련학생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3.>

② 출전결과보고서에는 경기실적, 개인별 경기력 분석·평가·대책 및 대회참가팀의 상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2017.12.14.>

제11조 삭제 <2017.12.14.>

제12조 삭제 <2017.12.14.>

제13조(대회출전 및 훈련 위반자 징계) ① 특기자는 총장이 정한 대회에 출전하여야 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대회에 출전할 수 없으며 전문실기 지도교수가 계획하는 훈련에 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2.>

② 특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학칙 제86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신설 2019.11.22.>

제14조(전문실기 종목 변경) 특기자가 학칙 제76조제4항에 따라 전문실기 종목을 변경할 경우에는 재학 중 1회에 한한다. <신설 2017.12.14.>

부 칙(제423호, 2004. 3. 8.)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한국체육대학교체육특기자관리규정(규칙 제397호)는 폐지한다.

부 칙(제569호, 2011. 9. 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578호, 2011. 11. 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48호, 2017. 12. 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06호, 2019. 11. 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28호, 2020. 11. 23.) (한국체육대학교 사무분장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특기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훈련처장”은 “훈련학생처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훈련처”는 “훈련학생처”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훈련처장”은 “훈련학생처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훈련처장”은 “훈련학생처장”으로 한다.